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부안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3. 12. 20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경고 : 3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부적정

- 1급 강○○ 외 3명은 주택건설자금대출 4건에 대해서 [23.04.03. 개정 이전 취급] 3건 (2,920,000천원)은 차주가 자기자본 부족액(①문○○ 80,950천원, ②김○○ 83,520천원, ③김○○ 79,190천원)을 여신관리계좌에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대출한도를 총 공사금액의 80%로 산정하였으며, [23.04.03. 개정 이후 취급] 1건(백○○○○건설 3,200,000천원)은 건축공사비 지급 시 차주에게 건축공사비 부족액(138,141천원)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직접공사비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급함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5편 제455조(대출한도)